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6재다965 소유권말소및손해보상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1. B
2. C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. 5. 12.자 2016다207157 판결
판 결 선 고 2016. 12. 15.

주 문

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한 재심만이 허용되므로 원고(재심원고)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특별항고는 재심으로 선해하기로 한다.

원고(재심원고)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

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재형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박병대
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박보영
----	-----	-----

	대법관	권순일
--	-----	-----